

전국규모연맹체 표준 규약

2014. 2. 13.



[사]대한근대5종연맹

전국규모연맹체 표준 규약

2014년 2월 13일 제정

2016년 4월 11일 제2차 임시이사회 개정

2020년 11월 27일 제3차 임시이사회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근거 및 명칭) ① 이 정관은 대한근대5종연맹(이하 ‘대한연맹’라 칭한다.)정관 제5조(조직) 제3항 규정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이 승인된 전국규모연맹체(이하 “본 연맹”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② 대한연맹 산하단체는 근대5종 ○○○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근대5종연맹”이라 칭하고, 그 영문명칭으로는 “○○○○○○○ Modern Pentathlon Federation”(약칭 “○○○○”) 이라 한다.

제2조(목적 및 지위) ① 본 연맹은 아마추어 정신에 입각하여 등록단체(팀) 상호간의 자치적인 활동을 통하여 친목을 도모하고 ○○ 근대종의 저변확대와 경기력 향상 및 가입단체의 지도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연맹은 대한민국 근대5종을 소관하는 대한근대5종연맹의 전국규모연맹체로서 ○○○부 근대5종을 대표하는 단체이다.

제3조(소재지 등) ① 본 연맹의 사무소는 ○○○○ 에 둔다.

제4조(사업) ① 본 연맹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한연맹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전국○○근대5종경기대회의 주최 및 주관
2. 동일급 국제교환경기대회 주최·주관 및 참가

3. 근대5종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4. 근대5종 선수 및 심판, 운영요원 등의 양성 지원
5. 근대5종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6. 근대5종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7. 대한연맹이 인정하거나 위임받은 사업
8. 본 연맹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9. 기타 산하단체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회원은 대한연맹에 선수등록을 필한 ○○단체 및 ○○근대 5종부 (학교 및 실업)로 구성된 단일팀으로 한다.

②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이를 산 하단체 이사회 의 의결로써 확정하고, 회장은 이를 차기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본 연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본 연맹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 결권 행사
2. 본 연맹에 대한 건의 및 소청
3. 본 연맹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의 참가
4. 본 연맹이 승인 사업의 주최, 주관 및 후원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본 연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정관, 제규정 및 지시사항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의 의결사항 준수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4. 본 연맹 주최 및 주관대회 참가

제8조(회원의 상벌) ① 회원으로서 본 연맹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회원으로서 본 연맹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
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회의 의
결을 거쳐 징계를 할 수 있다.

③ 포상 및 징계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3 장 대 의 원

제9조(대의원) ① 본 연맹의 대의원은 각 회원단체 대표가 당연직 대의원이며, 회
원단체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지명하
여 권한대행으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② 각 가맹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전에
본 연맹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 하여야 한다.

제10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총회는 제9조 제1항의 대의원 또는 그 대리인으
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연맹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요사항

제11조(정기총회 와 임시총회) ① 본 연맹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본 연맹 회장이 소집한다. 단, 등록단체가 50개 미만일 때에는 3분지 1 이상, 50개 이상 100개 미만일 때에는 4분지 1이상의 참석으로 개최되고, 100개 이상인 때에는 등록에는 등록단체의 5분지 1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 본 연맹의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본 연맹 회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1. 본 연맹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제26조 제4항 제3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에도 불구하고 본 연맹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어나 대의원, 감사가 본 연맹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 또는 대의원이 총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이사 또는 대의원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④ 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전에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제12조(의장) 총회의 의장은 본 연맹 회장이 된다.

제13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총회는 이 규약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

적대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리단체는 재적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제14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본 연맹의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임원이 기소된 경우에는 경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 해임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⑤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본 연맹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5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연맹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4 장 이 사 회

제16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본 연맹의 이사회는 본 연맹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② 본 연맹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규정의 제정 및 개정
4. 기본 자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사항

③ 이사회에서 심의한 안건 중 부결된 사항은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제17조(이사회 의 소집) ① 본 연맹의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본 연맹의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6조 제4항 제4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으로 자신과 본 연맹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⑦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통신수단 등에 의해 심의 및 결의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규약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9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① 본 연맹의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② 본 연맹의 회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써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과반수가 정식으로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 5 장 임 원

제20조(임원) ① 본 연맹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7인 이내
3. 이사 15인 이상 29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3. 감사 2인

- ②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임원의 수는 본 연맹 총회 의결로 10명 이하로 증원할 수 있으나 대한연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사로 한정)
- ③ 본 연맹의 임원은 연맹에서 다른 임원의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 ④ 임원은 등록선수로 활동할 수 없으나 본 연맹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체육회 승인을 받아 이를 달리할 수 있다.

제21조(회장의 선출) ① 회장은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총회에서의 회장 선출이 불가피한 경우 본 연맹은 대한연맹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대의원, 선수 또는 선수이었던 자(지도자는 제외한다.), 지도자(본 연맹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동호인(본 연맹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등으로 100명 이상 300명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단, 10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에 의거, 대한연맹의 심사를 받아 총회에서 회장 선출할 수 있다.
- ④ 본 연맹의 제3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의 인적 구성은 대한연맹 정관 제20조를 준용하여야 한다.
- ⑤ 회장선거 후보자는 등록시에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⑥ 본 연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본 연맹에 귀속된다.

1.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2.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⑦ 회장 입후보를 위한 제출서류, 기탁금의 금액 등 본 연맹의 회장선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본 연맹이 대한연맹의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 후 본 연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의 2(후보자의 자격) ① 제2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보자가 될 수 없다.

② 회장을 포함한 비상임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 임기 만료일 전 50일까지 후보자 등록의사를 사무처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이 제2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을 때에는 제출한 때부터 선거일까지 제23조제1항에 따른 부회장(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이 직무를 대행하되, 부회장 전원이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은 이사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회장은 그 다음날부터 종전의 직무로 복귀한다.

1. 제2항의 후보자 등록의사를 사무처에 서면으로 철회한 경우
2. 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3. 후보자 등록 이후 후보자에서 사퇴한 경우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국제관계 업무에 한해 본 연맹을 대표할 수 있다.

1. 국외에서 개최되는 본 연맹 대회 및 회의 등
2. 국제근대5종연맹 및 아시아근대5종연맹이 주최하는 국내 개최 국제행사(대회

및 회의 등 포함)

⑥ 제2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비상임 임원은 제출한 때부터 선거일까지 회장선거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의결 및 결재에 참여하지 못한다.

⑦ 상임임원 및 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 임기 만료일 전 5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⑧ 다른 체육단체의 임직원이 본 연맹 회장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체육회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 임기 만료일 전 5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2. 다른 회원종목단체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후보자 등록 시작일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3. 시·도체육회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 임기 만료일 전 5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4. 시·도종목단체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동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따른다.

⑨ 본 연맹 임직원이 시·도종목단체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단체 회장 임기만료일 전 5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⑩ 대한연맹 회장선거규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단체의 장은 사고 또는 회장선거 이외 선거 출마로 인해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도 선거인이 된다.

⑪ 후보자, 상임 임원 및 직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선거인이 될 수 없다.

제21조의3(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① 회장선거 후보자는 본 연맹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 시에 기탁금 50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장 후보자 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기탁금의 금액 등 본 연맹의 회장선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본 연맹이 체육회의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 후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회원·준회원 단체에 한한다.

제21조의4(당선인 결정) ①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6조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1명을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21조의5(기탁금 반환) ① 본 연맹은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납부 받은 기탁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30일 이내에 후보자에게 반환 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않는 기탁금은 본 연맹에 귀속된다.

1.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2.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② 본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탁금 반환의 기준으로 정한 유효투표총수의 비율 기준은 본 연맹의 특성에 따라 100분의 25 범위 이내에서 상향시킬 수 있다.

제22조(선거의 중립성) ① 본 연맹은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본 연맹에서 직접 선거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 연맹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7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에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3. 본 연맹과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4.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본 연맹과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③ 본 연맹의 임·직원은 체육회의 회장선거, 대한연맹, 본 연맹, 다른 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시·도단체 등 체육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체육회, 대한연맹, 본 연맹,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시·도회원단체의 다른 임·직원, 대의원, 선거인단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본 연맹의 임·직원이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이사로 한다.) 3분의 1 또는 재적대의원(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대의원으로 한다.) 4분의 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본 연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⑤ 대한연맹은 본 연맹의 선거공정성 확보를 위해 회장선거 관리 등에 관하여 개선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국규모연맹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3조(회장의 사고 또는 결위시 직무대행) ① 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1월 이상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이사

회에서 선출된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자가 대한연맹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대행자는 제2항의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2항의 대행자를 선출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24조(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본 연맹의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대의원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1.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육성 대학팀이 2개팀 이내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한다.

2. 국가대표선수 출신자가 재적 임원수의 20%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한다.

3. 비경기인(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재적임원수의 20%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한다.

4. 여성이 재적 임원수의 30%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행정감사 1인, 회계감사 1인(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④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본 연맹의 임원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대한연맹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⑥ 체육회는 구비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인준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원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⑦ 본 연맹의 대의원은 임원이 될 수 있다. 단, 한 개팀에 1명으로 제한하며, 최대 10명으로 한다.

제25조(동일인의 겸직제한) ① 본 연맹의 임원은 다른 종목단체의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본 연맹은 관련 5종목(사격, 펜싱, 수영, 승마, 육상)육성에 필요하다고 본 연맹의 대의원총회가 의결한 경우에 다른 종목단체의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② 본 연맹의 임원은 다른 종목단체의 회장선출에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본 연맹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③ 본 연맹의 임원 중 회계감사는 다른 종목단체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다.

제26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연맹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연맹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 또는 대한연맹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⑤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⑥ 본 연맹 임원이 본 연맹, 대한연맹, 체육회, 다른 종목단체 및 시·도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⑦ 본 연맹 임원이 본 연맹, 대한연맹, 체육회, 다른 종목단체 및 시·도단체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유로 체육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⑧ 본 연맹의 임원이 해당단체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⑨ 대한연맹, 체육회, 다른 종목단체 및 시·도단체를 대표하는 자로서 본 연맹의 임원이 된 자가 해당 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본 연맹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제27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계감사는 연임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②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 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회장의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회장

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에 4년을 추가한 기간으로 보며, 이 경우 제27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1회 재임한 것으로 본다.

제27조의2(연임 횟수의 산정) ① 임원의 연임 횟수 산정 시 다음 각 호에 따르며,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

1. 회장의 연임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부회장의 연임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이사 및 감사(회계감사 제외)의 연임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

② 임원의 연임 횟수 산정 시 연임 여부는 전임 임기의 만료일과 후임 임원으로서의 취임일의 연속여부와 관계없이 전후 임기 내 임원으로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면 1회 연임으로 산정한다. (임기 내 사임한 경우도 포함한다.)

③ 제27조 제3항의 보선된 임원과 증원으로 선임된 임원은 재임기간과 관계없이 1회 재임한 것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임한 임원이 동일 임기 내에 임원으로 보선 및 증원된 경우는 재임 횟수로 추가 산정하지 않는다.

④ 제2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맹의 임원은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18조, 제20조에 따라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제28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회장으로 한정한다.)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중

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중 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중 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 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

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

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6. 국회의원

7. 사회적 물의,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기타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8. 체육회 이사회가 본 연맹을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본 연맹의 임원이었던 자로 지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개정 2020.. 00.00.>

②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본 연맹과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본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본 연맹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본 연

맹은 해당자로부터 본 연맹과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 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본 연맹 간 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익이 제기되면 체육회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경우 이에 따른다.

④ 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제29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이사 및 감사가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처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사, 감사, 또는 회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본 연맹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이 대한연맹의 스포츠평정위원회 또는 이사회 안건으로서 통지된 경우, 그 시점부터 관리단체 지정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임원의 사임은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다.

③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제24조 제6항에 따라 체육회로부터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자
2. 제28조에 해당하는 때
3. 시·도회원단체 및 전국규모연맹체의 임원 또는 그 단체를 대표하는 자가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4.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대행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때

제 6 장 각 종 위 원 회

제30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본 연맹은 사업수행과 목적달성을 위하여 이사회
의 자문기구로서 경기위원회(대회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선수위원회, 심판위원
회, 생활체육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한다. 다만, 심판위원회는 국제근대5종
연맹경기규정에 따라 경기위원회 내에 둔다.

② 본 연맹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
다.

③ 각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등록 대학팀이 20%이내 일
 경우에는는 예외로 한다.

④ 심판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경기인(전국대회 3위 이내 입상자) 출신자가 재적위원수의 50% 이상 포함되
어야 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⑤ 본 연맹의 등록선수는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⑥ 제1항의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연맹의 해당 위원회
의 규정에 따라 본 연맹이 별도로 정한다.

제31조(스포츠공정위원회) ① 본 연맹은 제규정 관리, 표창, 또는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체육회와
협의하여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스포츠 또는 법률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체육회, 대한연맹, 본 연맹, 다른 종목단체 및 시·도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장애인종목단체 등 체육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자

2. 체육회, 대한연맹, 본 연맹, 다른 종목단체 및 시·도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장애인종목단체 등 체육단체에서 임직원으로 근무 중인 자

④ 이 규정 외에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 연맹이 대한 연맹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32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제28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본 연맹에 설치하는 제30조 및 제31조의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15명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 7 장 자 산 및 회 계

제33조(재산의 구분) ① 본 연맹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부동산

2. 기금

3. 운영재산 중 이사회 의결로 기본 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4.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③ 기부금품은 그 기부자의 지정에 따른다.

④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대한연맹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재원) 본 연맹이 제4조에 따른 사업 수행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대한연맹 지원금)
2.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3. 기부금 및 찬조금
4. 사업 수입금
5. 기타 수입금

제35조(잉여금의 처리) 본 연맹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36조(재산관리) ① 본 연맹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본 연맹이 재정적·업무적 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대한연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입금(해당 회계연도내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② 본 연맹이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 연맹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본 연맹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재산의 대여 및 사용) 본 연맹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자에 대한 대여 및 사용의 경우도 상당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체육회, 대한연맹, 다른 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시·도단체의 임직원
2. 본 연맹의 임직원과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3. 체육회, 대한연맹, 다른 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시·도단체 등과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

제38조(회계연도) 본 연맹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9조(예산 편성 및 결산) ① 본 연맹은 매 회계연도 시작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 종료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본 연맹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 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단 홈페이지를 운영치 않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0조(회계감사 등) ① 본 연맹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② 본 연맹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하고, 재산 및 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한연맹의 규정에 따라 본 연맹이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사 무 처

제41조(사무처) ① 본 연맹은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단, 사무처를 구성치 못한 경우, 전무이사가 사무처 업무를 대신한다.

② 사무처장은 본 연맹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으며,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회장을 제외한 임원(감사를 제외한다.)은 사무처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처장이 위법 또는 부당하게 사무를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이사회회의 의결이 없는 한 사무처의 통상적인 사무에 대하여 관여할 수 없다.

④ 본 연맹 임원의 친족을 사무처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임원 취임전 사무처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예외로 한다.

⑤ 사무처장 및 직원은 법령 및 인사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⑥ 사무처장을 포함한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42조(사무처의 운영 등) 본 연맹은 사무처의 구성,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한연맹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야 하며, 아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 제정 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한연맹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1. 사무처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가. 직원의 신분보장

나. 외부 인사 3인 이상이 포함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인사위원회 구성

다. 채용시 공개채용 원칙 및 체육인 출신에 대한 기회제공

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직원에 대한 직위해제

모든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제43조(이의신청 및 감사) ① 대한연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국규모연맹체 조직 운영, 사업 및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② 대한연맹은 본 연맹은 제1항에 따른 조사·감사결과 업무관련 비위 또는 직무태만이 있는 경우 해당 임직원에게 대해서 본 연맹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본 연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 9 장 보 칙

제44조(해산) ① 본 연맹은 재적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한다.

② 산하단체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을 대한연맹의 승인을 얻어 국가 또는 산하단체의 목적과 유사한 공공단체에 기부한다.

제45조(규약변경) ① 규약 변경은 이사회 의결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대한연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 연맹의 규약은 대한연맹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유효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③ 대한연맹이 본 연맹의 규약을 보고받은 후 이에 대한 개·수정 및 삽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이에 대한 반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연맹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46조(규정 제·개정 등) ① 본 연맹은 대한연맹 전국규모연맹체 표준규약에 따라 규약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에 본 연맹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본 연맹 이사회의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개정한다.

③ 본 연맹의 규약 및 규정(사무처 관련 규정 포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

여야 한다. 단, 홈페이지를 운영치 않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7조(규약의 해석) ① 전국규모연맹체 표준규약은 본 연맹의 규약에 우선하며, 본 연맹 규약을 전국규모연맹체 표준규약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본 연맹 규약과 전국규모연맹체 표준규약이 상이할 경우에는 전국규모연맹체 표준규약을 따라야 한다.

② 본 연맹이 대한연맹 정관, 전국규모연맹체 표준규약 및 기타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대한연맹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48조(제한사항) 본 연맹이 대한연맹의 정관 및 전국규모연맹체 표준규약에서 규정한 사항이나 대한연맹이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한연맹은 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제 10 장 부 칙

부 칙 <2014. 2.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산하단체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2014. 2.13.)의 승인을 얻은 후 대한연맹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4.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 연맹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2016. 4.11.)의 승인을 얻은 후 대한연맹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삭제

② 본 연맹 임원은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체육회 회장선거일로부터 30일 전까지를 그 임기로 하되, 그 이전에 부칙 제1항에 따른 회장 선거를 실시하여 회장을 선출

한 경우에는 그 회장이 취임한 후 다음 임원이 선임될 때 까지를 그 임기로 한다.

③ 부칙 제1항에 따라 선출되는 회장과 회장이 취임한 후 선임된 임원의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를 2020년 12월까지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018년 12월까지로 한다.

④ 본 연맹 임원의 중임 횟수에는 대한연맹의 임원의 중임 횟수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 체육회 회장 선거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의 임기는 중임제한 횟수 산정시 중임횟수로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전국규모연맹체 회장선거 시점, 임원의 임기, 임원의 수 및 임원의 중임 횟수에 관해서는 부칙 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⑥ 이 규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대한근대5종연맹 회장선거에 선거인단 추천을 위해 2016년도 첫 회장선거에 한해 대의원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할 수 있다.

부 칙(2020.11.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2020. . .)의 승인을 얻은 후 대한연맹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칙개정) 이 규정 부칙(2016. 4.11.)제2조 제3항 중“임원의 임기를 2020년 12월까지”를 “2021년 정기총회일 전날까지”로 한다. 감사의 임기는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제3조(부칙개정) 이 규정 부칙(2016.3.21.) 제2조 제5항 중 “감사의 임기는 2018년 12월까지”를 “감사의 임기는 2019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제4조(임원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 제1항 제2호에 관하여 회원종목단체는 2021년 정기총회일까지 개정 규정에 맞도록 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